

서울관광재단

정관(定款)변경 보고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3월 2일
제출자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1. 제안이유

- 가.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공기업담당관-12997호, 2019.11.06.)
에 따른 정관 개정

2. 주요내용

- 가. 기본재산 목록 [별표3]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기본재산 목록 <신설 2020. 3 .00.> (단위 : 원)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추가출연
		서울관광재단		잉여금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공기업담당관-12997호, 2019.11.06.)
-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863호, 2019.10.2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이사회 의결 예정

붙임 : 1. 제안근거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정관(안) 1부 끝.

※ 작성자 :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노준식 팀장 (☎ 3788-8137)

붙임#1

제안근거 _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공기업담당관-12997호,
2019.11.0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당은 제로페이!

I·SEOUL·U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
서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니, 모든 기관에서는
‘**20.3.31.(화) 까지** 기관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와 관련, 출연기관 표준정관(안) 및 기본재산 정관 기재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며 시 주관부서에서는 산하 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
록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연기관 표준정관 1부.
2. 기본재산 정관 기재 관련 행정안전부 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기본재산 정관기재 시정요구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주제: 기본재산 정관기재 시정요구
작성일: 2019-11-06
수신부서: 서울시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답변부서: 행정안전부
답변일: 2019-11-06
답변자: 김민정
답변내용: 기본재산 정관 기재 시정요구

첨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997 (2019-11-06) 접수 기획예산팀-1240 (2019.11.6.)

제안근거 _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863호, 2019.10.29.)



행정안전부

정보화
보다 나은 정부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 회신

I.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11281호 (2019.9.23.) 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질의 1)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자본금 또는 출연
금이 기본재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질의 2) 기본재산의 기재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질의 1) 일반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
산, 회계연도 세계양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
한 재산**을 의미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비영리재단법인 참조) 따라서 **지방출자
출연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출연금은 출연기관 기본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판단됩
니다.**

○ (질의 2) 지방출자출연법 상 기본재산의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에서 출연기관에 대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
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
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제40조제4호에 의하
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될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록을 정관의 별지로 기재하
여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시 서울시 협의(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 및 주무관
청의 허가(민법 제45조제3항)를 받도록 하여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침을 잘 사용해 쾌활한
용기와 경험과 함께 성장 10/29

별첨자

시행일: 2019.10.08. ~ (2019.10.08.) 종수: 2019.10.31. ~ (2019.10.31.)
부서: 30116 (제작부서)
주소: 서울특별시 한우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전화: 044-206-3966 / 팩스: 044-204-8978 / jingui100@mail.ko.kr / 비밀번호: 6

붙임#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3] 기본재산 목록 <신설 2020. 3 .00.> (단위 : 원)</p>		
	구분	출연자	금액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추가출연
	서울관광재단		잉 여 금

붙임#3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정관

제정 2018. 4. 23.

개정 2019. 4. 9.

개정 2019. 11. 12.

개정 2020. 3.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대표이사, 노동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12.>
 4. 감사 2인 이내
- ② 이사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당연직 이사와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2019.11.12.>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단,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관광, MICE 관련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5. 기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 후보자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다만 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9.>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과 정 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때 파견된 인원은 [별표2]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 ·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29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 산 과 회 계

제3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출연한 금원, 유가증권, 동산 및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
 - 3.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보조금과 결산된 잉여금 중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 4. 기금으로 적립한 금원
-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지정기부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하며, 기부금에 대하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

다. <개정 2019.4.9.>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9.>

제33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기부금 등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제3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시장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의 당연직 이사와 제13조의 직무대행자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업양수도 계약에 관한 특례) ① 재단은 재단설립 당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업무에 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재단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승계 한다.

③ 전항에 따른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부 칙 <2019. 4.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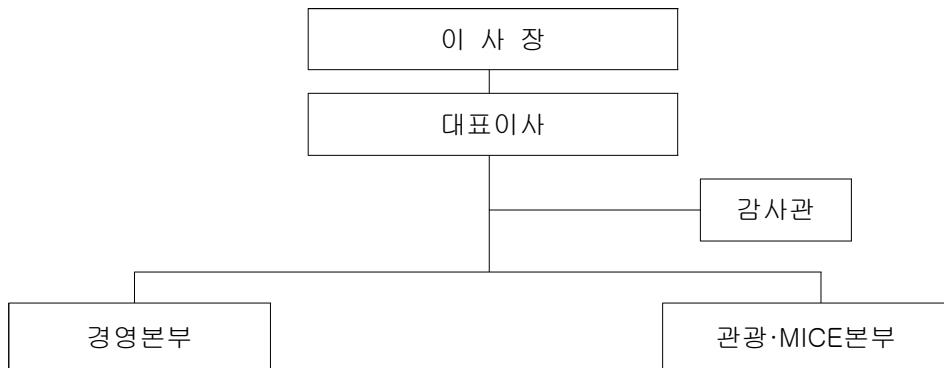
부 칙 <2019. 11.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직도 : 2본부 <개정 2019.4.9.>



[별표2] 정원표

(단위: 명)

임원	일반직					전문직	합계
	1급	2급	3~4급	5~6급	소계		
1	5	12	33	45	95	36	132

[별표3] 기본재산 목록 <신설 2020. 3.00.>

(단위 : 원)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추가출연
	서울관광재단		잉여금